

1. 의결주문

자치경찰사무 및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1개의 시·도에 2개의 시·도경찰청을 두는 경우, 시·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990호, 2021. 03. 30. 공포, 2021. 07. 01. 시행)됨에 따라, 경기도에 2개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 예정(2021. 04. 23. ~ 05. 03.)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1”로 한다.

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복수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)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, 각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.

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경기도의 경우 제4조에 따른 관할구역마다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시·도경찰청(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을 말한다)”를 “시·도경찰청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표1로 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 경기도에 두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(제4조 관련)

명 칭	관 할 구 역
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	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관할구역
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	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북부경찰청의 관할구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생활안전·교통·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(생략) 1.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<u>별표</u> 에 따른 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. ~ 4. (생략) < 신 설 >	제2조(----- -----)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<u>별표1</u> -----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<u>제4조(복수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</u> <u>의 설치 등) 법 제18조제1항 단서</u> <u>에 따라 경기도에 경기도남부자치</u> <u>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</u> <u>찰위원회를 두며, 각 관할 구역은</u> <u>별표2와 같다.</u>
<u>제4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</u> 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) ① ~ ④ (생략)	<u>제4조의2(-----</u> -----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·도자치경찰위 원회 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 위원회”라 한다)는 시·도자치경	제5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
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
 원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 략)

1. ~ 3. (생 략)

4. 시·도경찰청(경기도의 경우에
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을 말한다)
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
 장이 추천하는 1명

5. (생 략)

 -----, 다만, 경기도의 경우
제4조에 따른 관할구역마다 추천
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시·도경찰청-----

5. (현행과 같음)